

국제활동에 관한 규정

(제10차 개정 2009. 11. 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연맹 헌장 제12조(국제협력방침)의 정신에 따라 한국스카우트연맹에 가맹 등록된 각급 조직단위 또는 개인의 국제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국제 연계활동을 조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1.12.29)

제2조(국제 활동의 범주) 이 규정에서 국제 활동이라 함은 아래에 정하는 국제행사에 참가하여 이룩되는 직접적인 경우와 해외스카우트를 국내행사에 초대하는 경우, 기타 통신수단을 이용한 간접적인 활동을 포함한 해외스카우트와 국내스카우트간에 이룩되는 일체의 우호적인 국제교류를 말한다.

1. 국제 행사

가. 세계스카우트 총회

나. 세계잼버리

다. 세계사무국이 주최하는 세계적 규모의 행사 및 교육훈련

라.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

마. 아시아·태평양지역 잼버리

바. 지역단위의 국제적 규모의 훈련 및 세미나

사. 회원국연맹 전국 규모의 잼버리 또는 야영행사

아. 기타 국제적으로 인정된 스카우트 기구 또는 유관단체가 실시하는 행사 또는 교육훈련

2. 국내 행사

가. 국내에서 개최하는 제(□) 스카우트 행사에 해외스카우트를 초청하는 경우

3. 기타 국제교류

가. 아마추어무선활동

나. 통신수단을 이용한 펜팔

다. 자매결연

라. 기타 교류

제3조(국제 활동의 주관) 헌장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이 규정 전 제2조에 정한 모든 국제 연계활동은 중앙본부에서 관장한다. (개정 78. 9. 20.)

제4조(파견원칙) 제2조에 정한 국제행사의 파견원칙은 국제커미셔너가 주재하는 중앙커미셔너회의를 거쳐 총재의 승인으로 파견한다. (개정 04. 12. 16.)

제5조(파견 자격기준) 국제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대표단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국제활동에 관한 규정)

위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지도자 : 중앙본부가 정하는 날 현재 등록을 필하고 국제교류활동 파견 연수를 필한 자 (개정 04. 12. 16.)
2. 대원 : 중앙본부가 정하는 날 현재 대에 가입하고 국제교류활동 파견 교육을 필한 대원. (개정 04. 12. 16.)
3. 기타 : 주최국 또는 초청국 연맹이 요구하는 참가자격을 갖춘 대원 및 지도자
4. 전 제1, 2, 3 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커미셔너가 정한다. (개정 86. 2. 21.)
5. 특별한 경우에는 전 제1, 2, 3호에 구애됨이 없이 제4조이 절차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신설 78. 9. 20.)

제6조(추천 및 선발) 국제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해외에 여행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절차를 거쳐 추천된 자 중에서 전형에 의하여 선발한다.

1. 대원 : 지방·특수연맹은 전조의 자격규정에 따라 대원의 친권자,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지방·특수연맹 연맹장이 추천한다. (개정 09. 11. 13.)
2. 지도자 : 지방·특수연맹 연맹장이 추천한다. (개정 09. 11. 13.)

다만, 중앙본부 임직원은 중앙본부 사무총국에서 관장한다.

제7조(파견경비) 국제행사에 파견되는 대표단의 소요경비는 수익자가 공동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대표단의 사전훈련) 국제행사에 파견되는 대표단의 구성원은 참가행사에 필요한 사전훈련 또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9조(대표단장의 임명 및 임무) 국제행사의 파견 주관에 따라 대표단장은 총재 또는 지방·특수연맹장이 임명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09. 11. 13.)

1. 대표단장은 전조에 정한 대표단의 사전훈련을 주관한다.
2. 대표단의 출국일로부터 귀국일 까지 대표단을 인솔하며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대표단의 활동내용을 기록 보관하여 본 연맹 발전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기증품을 수집, 귀국과 동시에 중앙본부에 전달한다.
4. 귀국 10일 이내에 6하 원칙에 입각한 대표단의 활동보고서를 중앙본부에 제출한다.

제10조(대표단의 활동규범) 국제행사에 참여하는 자는 대표단장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본 연맹 헌장 정신을 준수하여 국위선양에 앞장서야 한다.

제11조(국제신임장) 이 규정에 따라 해외에 파견되는 자는 사무총국 추천에 의하여 세계사무국이 발행하는 국제신임장을 국제커미셔너의 명의로 발급한다. (개정 04. 12. 16.)

부 칙

1. 이 규정은 197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1978년 9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1986년 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1987년 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1995년 2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1997년 12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1999년 12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01년 12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02년 2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